

의안번호	제19호
의결연월일	2024. 2. 22.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제안자 : 2024년 2월 13일, 논산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13일
다. 상정일자 : 2024년 2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 설명자 : 신속허가과장)

가.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변경 : “9미터” 를 각각 “10미터” 로 (안 제3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